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37조(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① (생략) <u><신설></u>	제37조(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과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거래를 통해 주권비 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 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 로서 제78조의2에 따른 상 장에 해당하는 등 공익 실 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비상장법인이 상장예 비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 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 하는 경우 제32조에 따른 우회상장으로 본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생략) <u><신설></u>	제78조의2(종속회사등 상장에 관한 특례) ① 주권상장법 인의 이사회는 종속회사 등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 (이하 ‘종속회사등’이라 한 다)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 상장(추가상장	

현행	개정안	비고
	<u>및 변경상장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 <u>1. 종속회사등의 상장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의할 것</u> <u>2.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결의할 것</u> <u>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와 소통하거나 주주총회 또는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것</u> <u>4. 제3호의 주주 소통 결과 또는 주주 동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한 찬성 여부를 결의할 것</u> <u>5. 제4호에 따라 결의한 찬성 여부를 종속회사등에 통지할 것</u> <u>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u>	

현행	개정안	비고
	<u>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전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해당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90조·제391조·제391조의3 및 제3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u> <u>1.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u> <u>2. 제1호의 위원은 이사 및 「상법」 제542조의8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외부 전문가일 것</u> <u>3. 독립이사가 위원장이거나 독립이사 및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2/3 이상일 것</u> <u>4. 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독립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을 것</u>	

현행	개정안	비고
<u><신 설></u>	<u>제157조의2(상장계약위약금)</u> ① <u>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제78조의2를 위반하여 종속회사등 상장과 관련된 주주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종속회사등을 상장(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억원 이내에서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u> ② <u>제1항의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세칙으로 정한다.</u> ③ <u>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 경우 위반 내용 및 관련 규정 등을 공표할 수 있다.</u> ④ <u>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u>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현행	개정안	비고
<u><신 설></u>	<u>제70조의3(종속회사등의 범위)</u> <u>규정 제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회사”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 상장하지 아니한 회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사(외국법인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u> <u>1. 주권상장법인의 종속회사</u> <u>2. 주권상장법인의 계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가 있는 회사. 이 경우 수직적 지배관계에 관한 기준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u> <u>3. 최근 1년 이내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였던 회사</u>	종속회사등 범위
제126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생략) ② 규정 제153조제1항제16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	제126조(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	개정안	비고
다. 1. ~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③ 규정 제153조제2항제10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 2. (생략) <u><신설></u>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매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④ (생략) <u><신설></u>	--. 1. ~ 2. (현행과 같음) 3. <u>주권상장법인이 규정 제78조의2의 의무를 위반하여 규정 제157조의2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받는 경우</u> 4. (현행 3.과 같음) ③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제157조의2제3항에 따라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사실 등을 공표한 다음 날</u> 4. <u>제2항제4호에</u> ----- ----- ----- -- ④ (현행과 같음) <u>제127조의2(상장계약위약금의 부과기준) ① 거래소는 규정 제157조의2의 위약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경우 주권상장법인에 다음</u>	위약금 부과절차 및 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u>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u> <u>1. 상장계약위약금(이하 “위약금”이라 한다) 부과 사유의 발생 사실</u> <u>2. 위약금 부과 절차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위약금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u> <u>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약금 부과 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u>1.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상장계약위약금 부과사유 발생에 대한 이의신청서</u> <u>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u> <u>3.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u> <u>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u>	

현행	개정안	비고
	<u>이내(주권상장법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 부과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상장신청인의 대표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u>④ 위약금의 부과금액은 주권상장법인의 시가총액 및 위반사항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서 정한다.</u> <u>⑤ 거래소는 주권상장법인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 서식에 따라 상장계약위약금 부과 통지서(이하 이 조에서 “통지서”라고 한다)를 해당 법인에게 통보해야 한다.</u> <u>⑥ 제5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u> <u>⑦ 그 밖에 위약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가</u>	

현행	개정안	비고
[별표 2의2] 질적심사기준 1. (생략) 2. 공통 기준 가. ~ 라. (생략) 마.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1) ~ 2) (생략) 3) <u>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영업양도, 현물출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설립된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가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것. 다만, 물적분할 이후에 모회사가 변경되거나 상장신청인의 주된 영업 부문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	<u>따로 정한다.</u> [별표 2의2] 질적심사기준 1. (현행과 같음) 2.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1) ~ 2) (현행과 같음) <u><삭제></u>	조문 정비

현행	개정안	비고
4) <u>재상장신청인이 분할재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배당정책, 자기주식소각 등 분할 신설법인 또는 존속법인의 주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인적분할 이후 존속법인에 대하여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u> 3. 특례 <u><신설></u>	<u><삭제></u> 3. ----- <u>가. 중복상장</u> <u>상장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종속회사등인 경우 이 특례를 적용한다.</u> <u>1) 영업의 독립성</u> <u>제2호가목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시장 또는 매출처, 사업모델 등의 동일성 여부, 관련 산업 또는 공급망에서의 역할, 독자적 제품 개발 또는 사업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u> <u>2) 경영의 독립성</u> <u>제2호나목1)의 기준을 적용</u>	조문 정비 영업 독립성 심사 기준 경영 독립성

현행	개정안	비고
	<u>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 겸직 상황, 인사·경영관리 시스템 및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이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u> 3) 투자자 보호 <u>제2호마목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을 추가로 심사한다.</u> <u>가)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가 규정 제78조의2(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주주영향 평가, 주주 보호방안 마련,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및 자회사 통지, 공시규정 제7조제1항제3호가목(8)(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가목(11)을 말한다)에 따른 공시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고려하여 상장신청인의 상장 추진에 찬성하</u>	심사 기준 투자자 보호 심사 기준

현행	개정안	비고
	<u>는 결의를 하였는지 여부</u> <u>나) 주권상장법인의 일반주주(최대주주등을 제외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u> (1)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은 <u>주권상장법인과 별도로 상장신청인을 상장할 필요성, 상장신청인의 산업적 특성 및 미래 성장성,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신청인과 간 관계 형성 배경·구조·기간, 주권상장법인의 유·무형자산 또는 물적·인적자원 등의 기여도, 주권상장법인의 자산·매출·영업이익 등에서 상장신청인이 차지하는 비중, 상장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희석 정도, 주권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가능성, 상장신청인의 상장이 자본시장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u> (2) 주주 보호 노력 이행 여부는 <u>기업설명회, 주주간담</u>	

현행	개정안	비고
	<u>회, 설문조사, 공시 등 일반 주주와의 소통 노력, 현금·현물배당, 자기주식 소각,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타 확약사항 등 구체적인 주주 보호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u> <u>(3) 주권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주 보호방안 등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u> <u>(4) (3)에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의 자산·매출·영업이익 대비 상장신청인의 비중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 미만(상장신청인의 추정 기업가치 비중이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서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동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다.</u> <u>(5) (3) 및 (4)에 불구하고 상장신청인이 주권상장법인</u>	

현행	개정안	비고
	<u>의 물적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을 말하며 영업양도, 현물출자 등을 포함한다)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u> <u>(6) (3) 및 (5)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동의 여부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은 제외하고 계산한다]으로 주주 보호방안 등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u> <u>다)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u>	

현행	개 정 안	비고								
가. ~ 다. (생략) <u><신 설></u>	나. ~ 라. (현행 가. ~ 다.와 같음) <u>[별표 12]</u> <u>상장계약위약금 부과기준</u> <u>1. 부과금액의 결정방법</u> <u>가. 해당 주권상장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정함</u> <u>나. 위반사항의 중요성 등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금액 산출</u> <u>2. 주권상장법인 시가총액별 위약금 부과금액 기준의 설정</u> <table><tr><th>과거 1년 평균 시가총액</th><th>위약금 기준금액</th></tr><tr><td><u>~ 1,000억원 미만</u></td><td>2억원</td></tr><tr><td><u>1,000억원 ~ 100조원 미만</u></td><td>5억원</td></tr><tr><td><u>100조원 이상</u></td><td>8억원</td></tr></table> <u>3. 위반사항의 중요성 판단 및 위약금 가중·감경 방식</u> <u>1) 위반사항의 중요성은 상·중·하 3단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아래의 표에 따라 구분한 각 판단 요소의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단계를 정한다.</u>	과거 1년 평균 시가총액	위약금 기준금액	<u>~ 1,000억원 미만</u>	2억원	<u>1,000억원 ~ 100조원 미만</u>	5억원	<u>100조원 이상</u>	8억원	
과거 1년 평균 시가총액	위약금 기준금액									
<u>~ 1,000억원 미만</u>	2억원									
<u>1,000억원 ~ 100조원 미만</u>	5억원									
<u>100조원 이상</u>	8억원									

현행	행	개정안	비고								
		<table><tr><th>구분</th><th>판단 요소</th></tr><tr><td>상</td><td>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래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td></tr><tr><td>중</td><td>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 그 외 “상”이나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td></tr><tr><td>하</td><td> - 단순한 절차 위반 또는 의무 이행 지연 등의 위반사항만 존재하는 경우 </td></tr></table>	구분	판단 요소	상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래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 그 외 “상”이나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하	단순한 절차 위반 또는 의무 이행 지연 등의 위반사항만 존재하는 경우	
구분	판단 요소										
상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래소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 - 위약금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 그 외 “상”이나 “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하	단순한 절차 위반 또는 의무 이행 지연 등의 위반사항만 존재하는 경우										
		2) 위약금 부과는 중요성 판단 결과 ‘중’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2.의 표를 적용하되, ‘상’인 경우 25% 가중할 수 있고 ‘하’인 경우 25%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별지 제4호의2 서식] 상장계									

현행	개정안	비고
	<u>약위약금 부과사유 발생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서</u> <u>상장계약위약금 부과 통지서</u> 1. 부과대상 : (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2. 부과금액 : ₩ (금 원정) 3. 납부기한 : 년 월 일 까지 4. 납부방법 - 입금방법 : 한국거래소의 보통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 계좌번호 : OO 은행 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거래소 - 기타 : 당일 자금화가 가능한 현금 또는 자기앞수 표(당좌수표 제외)로 입금 5. 부과근거 및 사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7 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1조의2 6. 기 타 한국거래소 이사장	

현행	개정안	비고
	[별지 제37호 서식] <u>상장계약위약금 부과 통지서</u> <u>상장계약위약금 부과 통지서</u> 1. 부과대상 : (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2. 부과금액 : ₩ (금 원정) 3.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4. 납부방법 - 입금방법 : 한국거래소의 보통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 - 계좌번호 : OO 은행 000-00-000000 - 예금주 : 한국거래소 - 기타 : 당일 자금화가 가능한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당좌수표 제외)로 입금 5. 부과근거 및 사유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7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71조의2 6. 기타 한국거래소 이사장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illegible]

현행	개정안	비고
결정이 있을 때 가.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을 때 (1) ~ (7) (생략) <u><신설></u>	----- 가. ----- -----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종속회사 등 상장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의가 있을 때</u> <u>(가) 상장규정 제78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이 주 주에게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같은 항 제2호 에 따른 주주에 대한 보호방안의 마련에 관 한 결의가 있을 때</u> <u>(나) 상장규정 제78조 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종속회사등 상장에 대 한 찬성 여부를 결의한 때. 이 경우 상장규정 같은 항 제2호의 주주 보호방안, 같은 항 제3 호의 주주 소통 결과</u>	

현행	개정안	비고
나. ~ 다. (생략) 4. (생략) ② ~ ③ (생략)	<u>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의 주주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u> 나.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